

case  
6

##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

### 요약

사례명	<b>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b>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0514 (2024.07.03.)
사실관계	중국산 이너 링(inner ring), 강구(steel ball), ABS 센서 등의 부품을 수입한 후, 이너 링에는 레이스웨이 가공을 수행하고 동일하게 레이스웨이 가공이 수행된 태국산 내·외부 플랜지를 결합하여 최종 제품 생산 및 미국 수출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여러 부품이 결합되는 조립 공정은 단순 조립에 해당하며,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이너 링 및 내·외부 플랜지에 정밀한 레이스웨이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로 결정되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태국인 것으로 판정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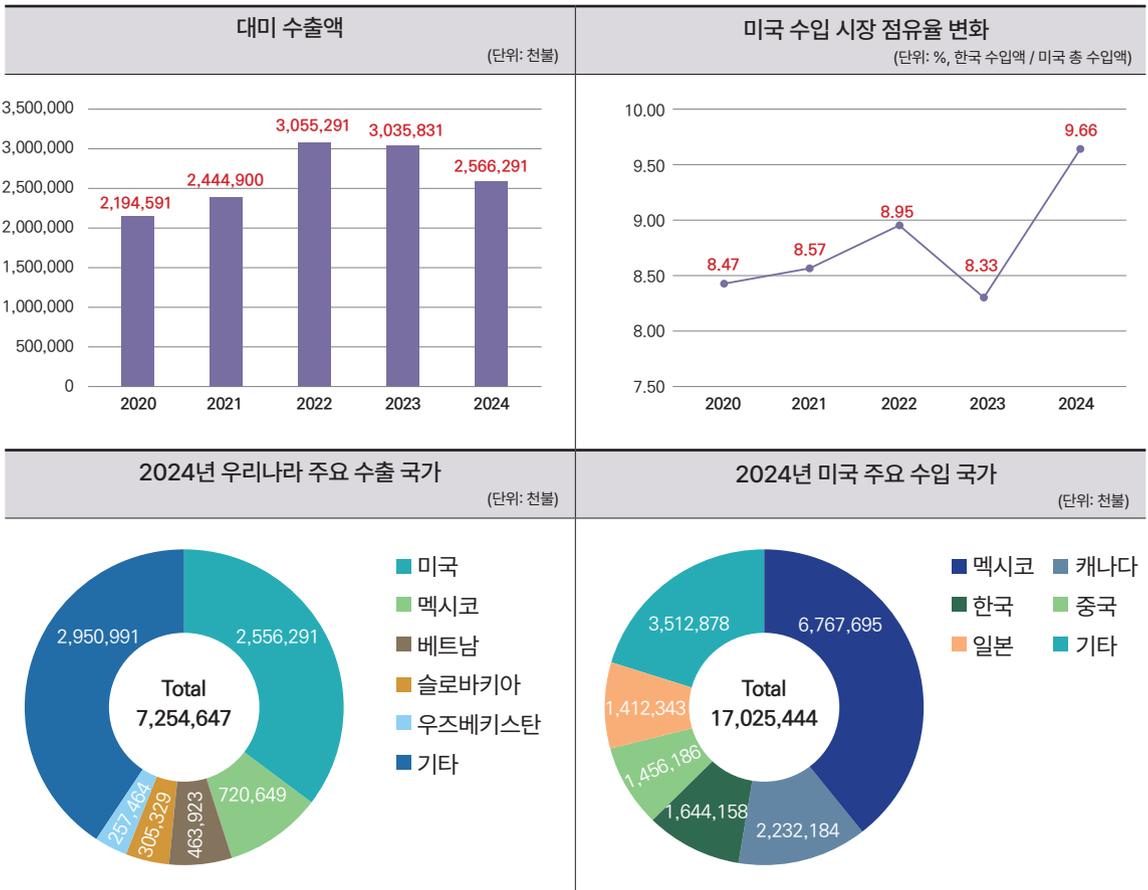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708.99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2.5%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시장정보

제8708.99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사례명**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0514 (2024.07.03.)

**사실관계**

<b>요청자</b>	New Torch Technology Thailand Company Limited (대리인: Autolin Inc.)	
<b>제품명</b>	•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 (제품번호 G3-350A)	
<b>구성</b>	• 내·외부 플랜지 (태국산) • 이너 링(inner ring), 강구(steel balls), 스피 링, 케이지, 기어 링, ABS 센서, 볼트, 그리스, 포장재 (중국산)	
<b>제품</b>	• 자동차 앞바퀴 구동계에 직접적으로 통합되어 회전 및 제동 제어를 지원	
<b>완제품 HTSUS</b>	• 8708.99.5800	

### 제조과정



### 상세공정

- 중국산 부품을 태국으로 수입
- 중국산 이너 링 가공
  - 정밀연삭을 통해 레이스웨이, 내경, 외경, 측벽 가공
  - 초정밀연삭을 통해 레이스웨이 가공
- 태국산 내/외부 플랜지 가공
  - 정밀선삭, 천공, 챔버링, 탭 가공, 열처리 등 수행
  - 정밀선삭을 통해 레이스웨이, 단면, 내경, 외경 가공
  - 정밀연삭을 통해 내경, 외경, 레이스웨이 가공
  - 초정밀연삭을 통해 레이스웨이 가공
- 최종 조립 공정 수행
  - 초음파 세척기로 모든 부품 탈자 및 세척
  - 부품 결합
  - ABS 센서 장착
  - 신호 감지기로 유효 전압값 측정
  - 최종 제품에 레이저 마킹 및 방청유 수작업 도포
-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CBP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해당 사례에서 최종 조립 과정을 단순 조립으로 간주하면서, 실질적 변형 여부는 이너 링과 내·외부 플랜지에 수행된 정밀한 레이스웨이 가공이 제품의 본질을 형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다음의 사례를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62528*

**내용** 베어링의 기본적인 성질(character)과 용도(use)는 강재 링(steel rings)이 정밀한 레이스웨이를 갖춘 레이스로 연삭 및 마감 처리된 후에 결정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1968 및 HQ 731969*

**내용** 강재 링이 한 국가에서 열처리 및 연마되고 다른 국가에서 레이스가 형성되고 정밀 마감이 이루어진 경우 레이스가 형성된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판정

판정 결과

- ☑ CBP는 CBP Ruling HQ 562528, HQ 731968, HQ 731969를 통해 정밀한 레이스웨이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가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로 인정됨을 밝힘
- ☑ 이에 따라, 본 사례에서는 이너 링과 내·외부 플랜지에 정밀한 레이스웨이 가공이 이루어진 태국을 원산지로 판정

기타 의견

- ☑ 완제품의 원산지가 태국산으로 인정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제재를 위한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는 공정인 정밀한 레이스웨이 가공이 태국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태국임
- ✓ 실질적 변형에 기초한 원산지가 태국이므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III 시사점

- 실질적 변형에 기초하여 베어링, 플랜지 등의 자동차 부품 원산지를 판단할 경우, 정밀한 레이스웨이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
- CBP는 사안별로 판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본 사례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다른 판정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0514 (2024.07.03.), <https://rulings.cbp.gov/ruling/N340514>
- CBP Ruling HQ 562528 (2002.12.10.), <https://rulings.cbp.gov/ruling/562528>
- CBP Ruling HQ 731968 (1990.03.01.), <https://rulings.cbp.gov/ruling/731968>
- CBP Ruling HQ 731969 (1990.03.19.), <https://rulings.cbp.gov/ruling/73196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